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9
----------	-----

제출년월일 : 1993. 1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내무부장관의 도지사 권한위임사항 변경
- 의료원 제반업무이관 (보사환경국 → 기획관리실)

2. 주요골자

- 병원의 분원설치 승인 : 내무부장관 → 도지사 (안 제 3조 제2항)
- 원장 임면 : 내무부장관 → 도지사 (안 제10조 제1항)
- 의료원 제반업무이관 : 보사환경국 → 기획관리실 (안 제16조 제3항)

3.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3 (권한의 위임)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58조 (권한의 위임) 제1항제1호및제2호

붙임 : 1.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기타 참고자료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중 "보건사회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 3조(사무소)②<u>병원</u>은 <u>내무부장관의 승인을</u> 얻어 필요한 곳에 <u>분원(이하"지사"라 한다)</u>을 둘 수 있다.</p>	<p>제 3조(사무소)② ----- <u>도지사</u> ----- ----- -----</p>
<p>제10조(임원의 임면)①원장은 <u>이사회</u>의 추천에 의하여 <u>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u> <u>도지사</u>가 임면한다.</p>	<p>제10조(임원의 임면)① ----- ----- <u>삭</u> <u>제</u> ----- -----</p>
<p>제16조(이사회)① (생략) ② (생략) ③ 원장은 <u>이사회</u>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u>이사회</u>는 <u>이사(보건사회국장)</u>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제16조(이사회)① (<u>현행과 같음</u>) ② (<u>현행과 같음</u>) ③ ----- ----- ----- (<u>기획관리실장</u>) ----- -----</p>

관련 법규 발췌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3(권한의 위임) 내무부장관은 이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92. 12. 8]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8조(권한의 위임) ① 내무부장관은 법제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제52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공단외의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에 관한 승인권
2. 법제58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자치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시·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면에 관한 승인권

[본조신설 93. 4. 10]